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81 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김태년 • 이소영 • 이강일

정성호 · 박희승 · 송옥주

전진숙 · 윤후덕 · 이재정
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지능(AI)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요의 증가에 따라,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·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비하고,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부재하여, 기업 간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,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·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,

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,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제14조의2(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거래활성화)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따른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·활용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특화된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다.
 - ③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및 비식별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학습데이 터의 품질인증, 반복 활용, 결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

하기 위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 터의 특성과 반복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으며, 이를 데이터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전의
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품질인증 및 유통기준
마련 업무는 이 법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의 가치평가 및 거래활성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따른 평가기법및 평가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・활용할 수 있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산업적활용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특화된 거래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특화된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이를 보급할 수 있다. ③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유통및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화 및 비식별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품질인증, 반복활

제20조(데이터 품질관리 등) ① 제20조(데이터 품질관리 등) ① ~ ⑤ (생 략) <신 설>

제21조(표준계약서) ① • ② (생 략) <신 설>

용, 결합 기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~ ⑤ (현행과 같음)
 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.
- 제21조(표준계약서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학 습데이터의 특성과 반복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으 며, 이를 데이터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.